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414

제출년월일: 2025. 4.
제 출 자: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차 변경계획안은**

가. 토지 취득: 2건 17필지 317,108㎡, 1,732,008천원

1)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 13필지 8,552㎡, 1,097,770천원

2)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 : 4필지 308,556㎡, 634,238천원

나. 건물 취득: 3건 3동 796.51㎡, 3,417,665천원

1)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신축): 1동 231.4㎡, 1,500,000천원

2)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신축): 1동 420㎡, 1,700,000천원

3)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매입): 1동 145.11㎡, 217,665천원

다. 기타(지장물 등) 취득: 1건, 132,335천원

1)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 1건, 132,335천원

라. 토지 처분: 1건 1필지 530,000㎡, 636,000천원

1)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 : 1필지 530,000㎡, 636,000천원

3. 붙임자료

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나. 2025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가]

2025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합계		**토지**	**2**	**1,484**	**362,840**	**4**	**318,592**	**2,094,848**	**2**	**317,108**	**1,732,008**
		건물	**4**	**2,812.58**	**13,983,800**	**7**	**3,609.09**	**17,401,465**	**3**	**796.51**	**3,417,665**
		기타				**1**		**132,335**	**1**		**132,335**
취득	매입	토지	2	1,484	362,840	3	10,036	1,460,610	1	8,552	1,097,770
		건물	4	2812.58	13,983,800	7	3,609.09	17,401,465	3	796.51	3,417,665
		기타									
	교환	토지				1	308,556	634,238	1	308,556	634,238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132,335	1		132,335
합계		**토지**				1	530,000	636,000	1	530,000	636,000
		건물									
		기타									
처분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530,000	636,000	1	530,000	636,000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붙임 나]

2025년도 제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처분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합계(2건, 17필지)			317,108	1,732,008			
	소계 1건, 13필지		8,552	1,097,770			
1	답	미탄면 창리 796-3	230	34,500	2025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김**
2	대	미탄면 창리 1074	684	181,260	“		김**
3	답	미탄면 창리 1074-1	1,124	171,410	“		김**
4	답	미탄면 창리 1078	999	109,890	“		황**
5	답	미탄면 창리 1078-1	1,186	130,460	“		황**
6	답	미탄면 창리 1079	1,228	135,080	“		이**
7	답	미탄면 창리 1075-1	84	6,174	“		국토 해양부
8	답	미탄면 창리 1075	585	64,350	“		기획 재정부
9	답	미탄면 창리 1075-2	41	3,936	“		기획 재정부
10	답	미탄면 창리 1080	157	17,270	“		정**
11	답	미탄면 창리 1080-2	63	4,630	“		기획 재정부
12	답	미탄면 창리 1081	1,988	218,680	“		천**
13	답	미탄면 창리 1082	183	20,130	“		천**
	소계 1건, 4필지		308,556	634,238			
1	임	미탄면 회동리 2-1	13,177	11,859	2025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 교환	산림청
2	임	미탄면 회동리 2-4	95,171	475,855	“		산림청
3	임	미탄면 회동리 2-6	131,998	105,598	“		산림청
4	임	정선읍 회동리 산2-1	68,210	40,926	“		산림청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처분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건물취득 합계(3건, 3동)			**796.51**	**3,417,665**			
1	전	평창읍 중리 165-1	231.4	1,500,000	2026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	평창군
2	잡	대화면 상안미리 1185-8	420	1,700,000	2025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	평창군
3	대	미탄면 창리 1074	145.11	217,665	2025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김**
기타 취득 합계(1건)				**132,335**			
1	지장물(비닐하우스 등) 및 손실보상			132,335	2025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천** 김**
토지 처분 합계(1건)			530,000	**636,000**			
1	임	미탄면 평안리 산 102	530,000	636,000	2025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 교환	평창군

[붙임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	인재육성과	8
2.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	경제과	11
3.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	산림과	14
4.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	산림과	19

사업 계획서 1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

○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학습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

※ 현황: 도서관외 학습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험 기간에만 개방된 공간(교회 등)에서 학습

□ 사업개요

○ 위　　치: 평창군 평창읍 중리 165-1번지

○ 사 업 량: 건축 1동 신축(1층, 231.4㎡)

○ 사 업 비: 1,500백만원(도비 200, 군비 1,300)

- 설계 및 부대비: 300백만원(설계, 측량, 문화재조사, 각종 인증 등)
- 공사비: 1,200백만원

○ 사업기간: 2025. 4월 ~ 2026. 6월

○ 주요시설: 스터디룸, 오픈형·독립형 학습공간, 휴게실, 공용공간(화장실) 등

□ 추진사항

○ 교육발전특구 사업 반영: 2024. 10월

○ 기본계획 수립: 2025. 3월

□ 검토사항(필요성)

○ 평창군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기점으로 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정책 최우선으로 정하고, 지역의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교육분야 중 시급한 개선 과제는 지역 내 학습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평창군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의 일부를 자기주도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청소년정책토론회: 지역 내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의견 반영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축)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축 연면적	용도 (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기준가격	예정가격	
평창읍 중리	165-1	전	1,252	231.4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	1,500,000,000	2026년 (상반기)

□ 향후계획

○ 시설건축 예산(1,300백만원) 1회 추경 반영: 2025. 3 ~ 5월

○ 스터디카페 운영기업 교육협력 제안 및 협약: 2025. 3 ~ 4월

○ 평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5. 4월

○ 사전절차 이행(문화재 영향평가 등): 2025. 4월

○ 자기주도 학습공간(스터디카페) 조성 설계용역: 2025. 5 ~ 7월

○ 자기주도 학습공간(스터디카페) 조성 건축공사: 2025. 8월 ~ 2026. 5월

○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2026. 5월

○ 자기주도 학습공간(스터디카페) 운영: 2026. 6월

□ 부지현황 및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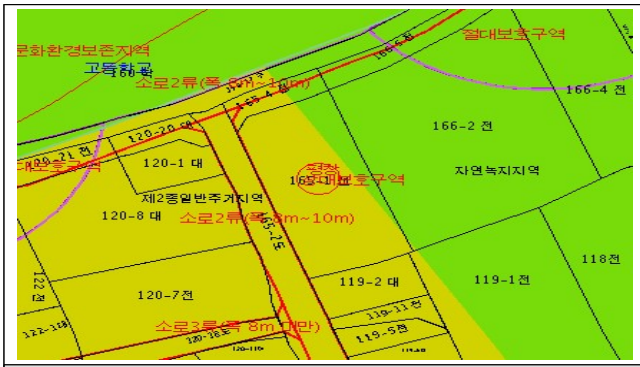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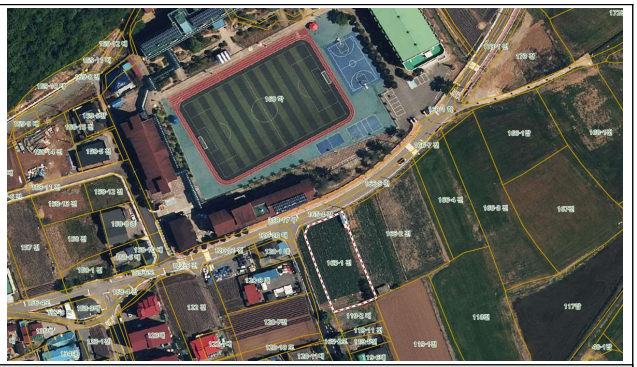

▸ <u>지역지구</u>: 도시지역,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매장유산 보존지역(영향평가, 표본 또는 시굴조사 ⇨ 필요시 정밀조사 발굴필요)

▸ <u>가능용도</u>: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u>부지면적</u>: 전체 1,252㎡(약 379평) 중 <u>**사업면적 620㎡(약 187평)**</u>

▸ <u>건폐율</u>: 60%이내(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므로 면적 비례산정시 <u>**약50%**</u>)

□ 현황사진

사업 계획서 2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

○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형 워케이션 센터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 사 업 량: 지상 1층, 420㎡

- 공유사무실 2개, 영상회의실, 소형 회의실, 물품보관실, 린넨실 등

○ 사 업 비: 1,700백만원(특별교부세 500, 군비 1,2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700**	**50**	**0**	**1,650**
국 비	0	-	-	-
도 비	0	-	-	-
군 비	1,200	50	-	1,150
기타(특교세)	500	-	-	500

□ 검토사항(필요성)

○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는 기업형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캠핑족에게 브랜드를 파는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설정하였음.

○ 당초,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을 계획하였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숙박·휴게공간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머물며 일하고 싶은' 공간적 목적성이 중요함.

○ 사업부지에 ‘평창관광문화재단’, ‘남한산성 세트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공간들과의 연계성, 건물 목적성, 브랜딩, 유지보수, 관리 등을 검토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 신축을 결정.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축)**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축 연면적	용도 (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기준가격	예정가격	
대화면 상안미리	1185-8	잡종지	51,458	420	제2종근린 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	1,700,000,000	2025년 12월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고향올래」신청 결정: ‘23. 4. 28.

○ 2023년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23. 8. 21.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10억 원-특교세 5, 군비 5): ’23. 12. 21.

○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계약: ’24. 2. 5.(용역 중지: ‘24. 4. 11.)

○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 시행: ’24. 8. ~ 9.

○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24. 11. 15.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위 치	용평면 재산리 1390	대화면 상안미리 1185-8	
사업내용	공유오피스 리모델링 및 신축(카페, 공유주방), 프로그램 운영	신축(공유오피스, 편의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23. 9. ~ 2024. 12.	2023. 9. ~ 2025. 12.	

○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변경계약 체결: ’24. 12. 30.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25. 5.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5. 5.

○ 건립공사 착공 ~ 준공: ’25. 6. ~ ‘25. 12.

□ 건축계획

○ 일반사항

구분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내용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조	420㎡ (건폐율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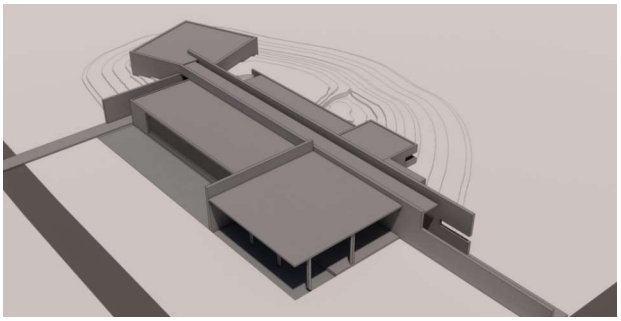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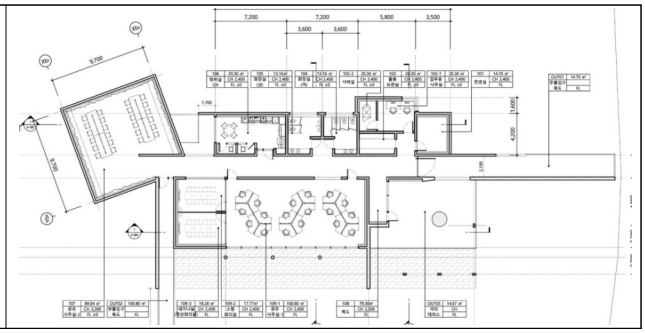

□ 위치도

사업 계획서 3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

○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연계 셔틀버스 운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승하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12필지

○ 사업기간: 2025. 5. ~ 12.

○ 사 업 량: 8,552㎡(사유지 9필지, 국유지 4필지)

○ 사 업 비: 1,450백만원(군비)

□ 추진사항

○ 청옥산 사업 관련 기본계획 용역: 2021. 10.

○ 청옥산 지방정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선정: 2022. 4.

○ 청옥산 셔틀버스 타당성 용역 추진: 2023. 4. ~ 2024. 9.

○ 청옥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3. 10. ~ 2024. 10.

○ 사유지 및 국유지 토지소유자 협의: 2024. 1. ~

※ 미탄면 '22년부터 이해관계자(소유자 등) 사전협의 진행

□ 검토의견(필요성)

○ 미탄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미탄면 시내권에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통하여,

○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8,552	8,552	315,353,410	1,097,770,500		
미탄면 창리	796-3	답	230	230	8,648,000	34,500,000	2025년 (하반기)	김**
	1074	대	684	684	95,144,400	181,260,000	〃	김**
	1074-1	답	1,124	1,124	32,933,200	171,410,000	〃	김**
	1078	답	999	999	27,472,500	109,890,000	〃	황**
	1078-1	답	1,186	1,186	32,615,000	130,460,000	〃	황**
	1079	답	1,228	1,228	33,156,000	135,080,000	〃	이**
	1075-1	답	84	84	734,160	6,174,000	〃	국토 해양부
	1075	답	585	585	16,087,500	64,350,000	〃	기획 재정부
	1075-2	답	41	41	382,530	3,936,000	〃	기획 재정부
	1080	답	157	157	4,019,200	17,270,000	〃	정**
	1080-2	답	63	63	550,620	4,630,500	〃	기획 재정부
	1081	답	1,988	1,988	58,248,400	218,680,000	〃	천**
	1082	답	183	183	5,361,900	20,130,000	〃	천**

○ 건물(매입)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건축 연면적	용도 (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합계			**145.11**			**217,665,000**		
미탄면 창리	1074	대	145.11	제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구조)	54,851,580	217,665,000	2025년 (하반기)	김**

○ 기타(지장물 등)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축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손실보상 등						**132,335,000**		
지장물	지장물	하우스 등				50,000,000	2025년 (하반기)	천**
기타	손실 보상					82,335,000		김**

□ 향후계획

○ 토지 매입계획 수립 : 2025. 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5. 4.

○ 1회 추경 편성 요구 : 2025. 4. ~ 5.

○ 매입 대상지 감정평가 : 2025. 6.

○ 토지보상 협의 및 매입 추진 : 2025. 6. ~ 12.

▢ 위치도

평창88송어
450m
산너미농장
피로연회관
미탄목욕탕
창3리
마을회관
미탄면사무소
미탄 중학교
미탄초등학교
S-oil
주유소
CU
평창미탄시장
샘내천
평창농협
미탄체육공원
400m
창리
42
백강아파트
평창88
송어횟집
창리고교
300m

▢ 구역도

매입예정(국유지 4필지)
매입예정(사유지 9필지)

▢ 현황사진

사업 계획서 4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

▣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군유림과 교환하고자 함

□ 토지교환 개요

○ 교환재산

- 국유림: 미탄면 회동리 2-1번지 외 3필지
- 군유림: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

○ 기　　간: 2025. 5. ~ 12.

○ 교환내용: 국유림 4필지(308,556㎡) ⇔ 군유림 1필지(530,000㎡)

○ 교환금액(가감정금액)

- 국유림 4필지(634,238천원) ⇔ 군유림 1필지(636,000천원)

■ 청옥산 사업개요

○ 위　　치 :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2. ~ 2026. 12.
○ 사 업 량 : 지방정원조성 58ha 내외
○ 사 업 비 : 150억원(도비 120, 군비 30)
○ 사업내용 : 야생화 테마정원 및 체험・편의시설 조성

□ 추진사항

○ 사업부지 편입 국유림 교환 관련 협의[평창・정선 국유림관리소]: 2023. 12.

○ 국유림 편입 및 교환 가능 여부 협의 [동부지방산림청]: 2023. 12.

○ 국유림 구역 내 자연휴양림 구역 해제 관련 협의[국립휴양림관리소]: 2024. 3.

○ 청옥산 지방정원 구역 지정 협의 완료 : 2024. 11.

○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완료: 2024. 12. ※ 국↔군유림 교환에 따른 선행 절차

□ 검토의견(필요성)

○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대상지 내 국유림이 편입되어 있어 군유림과 교환을 통해 산지에서의 인허가·협의 등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청 협의 결과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후 국유림과 군유림의 교환 절차 추진 가능하며 현재 사전행정절차인 지방정원조성예정지지정 등 완료되었음.

○ 관 련 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 토지(취득)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재산가액		처분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13,817,949**	**308,556**	**255,427,000**	**634,238,000**		
미탄면 회동리	2-1	임야	13,177	13,177	8,024,790	11,859,000	2025년 (하반기)	산림청
	2-4	임야	95,171	95,171	140,853,080	475,855,000	〃	산림청
	2-6	임야	131,998	131,998	77,218,830	105,598,000	〃	산림청
정선읍 회동리	산2-1	임야	13,577,603	68,210	29,330,300	40,926,000	〃	산림청

○ 토지(처분)

(단위 :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700,860**	**530,000**	**319,060,000**	**636,000,000**		
미탄면 평안리	산102	임야	700,860	530,000	319,060,000	636,000,000	2025년 (하반기)	평창군

※ 관련근거(선정사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교환의 조건)제2호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 향후계획

○ 교환 대상지 및 조건 등 (평창・정선)국유림관리소 협의: 2025. 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025. 4.

○ 자연휴양림 구역 해제 절차 추진: 2025. 5.

※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후 추진

○ 현지 조사 및 감정평가: 2025. 8.

○ 교환 면적 조정 및 계약체 : 2025. 12.

▢ 위치도

국유림(미탄면 회동리 2-1번지 외 3필지, 청옥산 일원)

군유림(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

▢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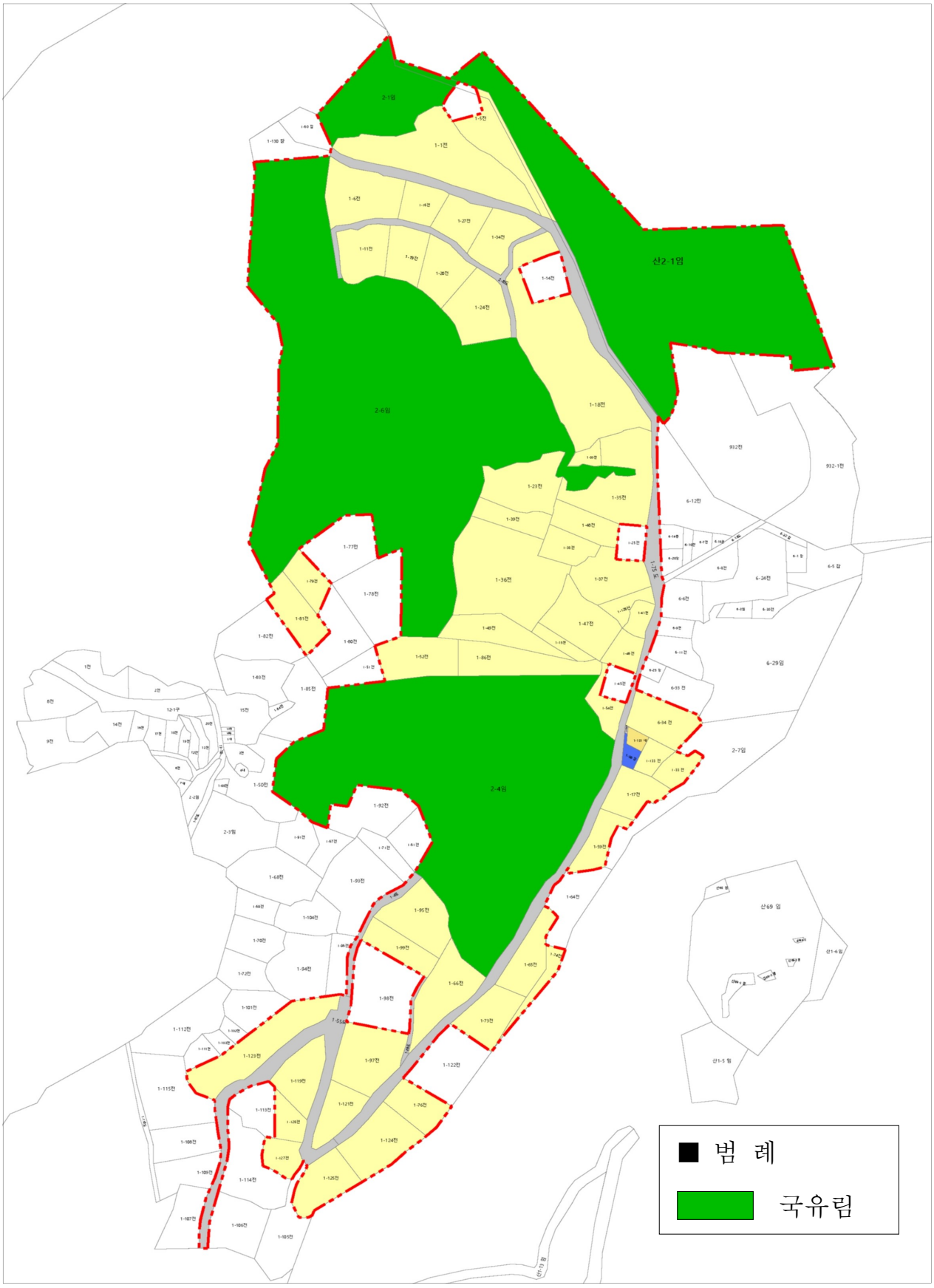

▢ 종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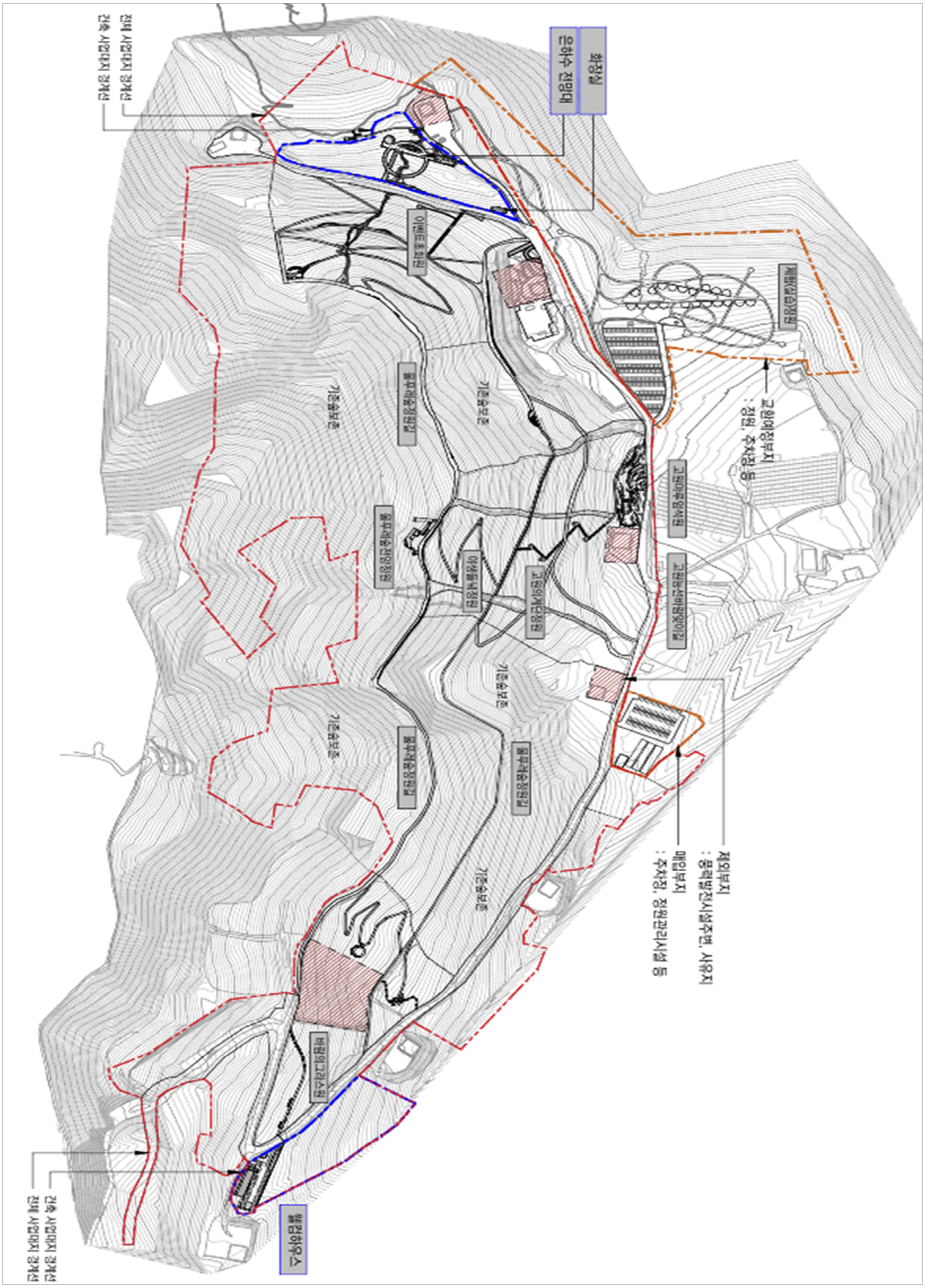

체험(실습)정원
교환예정부지
: 정원, 주차장 등
고원마루암석원
고원능선바람맞이길
제외부지
: 풍력발전시설주변, 사유지
매입부지
: 주차장, 정원관리시설 등
화장실
은하수 전망대
고원의계단정원
물푸레숲정원길
기존숲보존
야생들녘정원
이벤트초화원
물푸레숲전망정원
바람의그라스원
웰컴하우스
전체 사업대지 경계선
건축 사업대지 경계선

[붙임 라]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처분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